

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11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4. 15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개정이유

- 종전의 안산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,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바뀐 조항의 반영 및 용어 순화를 통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가.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조항을 반영하여 개정함(안 제2조, 안 제11조)

나. 기능 통합에 따른 위원회의 변경을 반영하여 개정함(안 제2조)

다. 「지방세기본법」 조항을 반영하여 개정함(안 제3조)

개정조례안 : 붙임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68조
-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5조, 제67조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 없음

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1. 03. 18. ~ 2011. 04. 07.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 : 붙임

- 현행조례(전문)

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단서 중 “「지방세법시행령」 제29조의 규정”을 “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 제67조”로 하고, 같은 조제4호 단서 중 “안산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”를 “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4호 중 “「지방세법」 제56조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68조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경우에 한하여”를 “때에만”으로 하고, 제5조제1호 중 “간의 공동지급의”를 “간 공동지급의”하며, 제6조제2항 단서 중 “민간인의 경우에는”을 “민간인은”으로 하고,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중 “받은 경우에는”을 각각 “받았으면”으로 하며, 제7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제7조제3항 중 “체신관서”를 “우편관서”로, “입금시키는”을 “입금하는”으로 하며, 제12조 중 “권한의 일부를”을 “권한 일부를”로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「지방세법시행령」 제39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 제65조에 따른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세 정 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세정과장 박 용 덕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세정담당 배 순 철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신 운 호 (행정 2198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“과년도 체납액”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. 다만, 「지방세법시행령」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를 제외한다.</p> <p>4. “특별공적”이란 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·관허사업제한·「조세범처벌법」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. 이 경우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. 다만, 안산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.</p> <p>5. ~ 6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“과년도 체납액”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. 다만, 「지방세법시행령」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를 제외한다.</p> <p>4. “특별공적”이란 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·관허사업제한·「조세범처벌법」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. 이 경우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. 다만, 안산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.</p> <p>5. ~ 6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과년도 체납액”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. 다만, 「지방세법시행령」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를 제외한다.</p> <p>4. “특별공적”이란 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·관허사업제한·「조세범처벌법」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. 이 경우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. 다만, 안산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.</p> <p>5. ~ 6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과년도 체납액”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. 다만, 「지방세법시행령」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를 제외한다.</p> <p>4. “특별공적”이란 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·관허사업제한·「조세범처벌법」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. 이 경우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. 다만, 안산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.</p> <p>5. ~ 6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과년도 체납액”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. 다만, 「지방세법시행령」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를 제외한다.</p> <p>4. “특별공적”이란 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·관허사업제한·「조세범처벌법」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. 이 경우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. 다만, 안산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.</p> <p>5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지급대상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「지방세법」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3조(지급대상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「지방세법」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3조(지급대상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「지방세법」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3조(지급대상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「지방세법」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3조(지급대상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「지방세법」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지급기준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. 다만,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</p>	<p>제4조(지급기준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. 다만,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</p>	<p>제4조(지급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. 다만,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</p>	<p>제4조(지급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. 다만,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</p>	<p>제4조(지급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. 다만,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지급한도) 제4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</p> <p>1.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(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)</p> <p>2.(생략)</p>	<p>제5조(지급한도)</p> <p>.....</p> <p>1.</p> <p>.....(..... 간 공동지급의</p> <p>.....)</p> <p>2.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포상금 지급신청) ①(생략)</p> <p>②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세입징수포상금신청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민간인의 경우에는</u> 해당 세입을 징수하는 실·과·소·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</p> <p>③(생략)</p>	<p>제6조(포상금 지급신청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.....</p> <p>.....</p> <p><u>민간인은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포상금 지급)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안산시 시세기본조례 제47조에 따른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포상금은 제1항에 따라 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당해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</u>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따르되, 수령자가 금융기관이나 <u>채신관서</u>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<u>입금시키는</u>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.</p>	<p>제7조(포상금 지급) ①</p> <p>.....<u>받았으면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②</p> <p>.....<u>해당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③</p> <p>.....<u>우편관서</u>.....</p> <p>.....<u>입금하는</u>.....</p> <p>.....</p>
<p>제11조(환수)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도착한 날까지의 기간동안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.</p>	<p>제11조(환수) ①.....</p> <p>.....<u>받았으면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.....</p> <p>.....<u>「지방세 기본법 시행령」 제65조에 따른</u>.....</p> <p>.....</p>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권한의 위임 등)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<u>권한의 일부</u> 를 구청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.	제12조(권한의 위임 등)..... <u>권한</u> <u>일부</u> 를.....